

# 교직원 보수 규정

제정 2013. 3. 1. 개정 2013. 7. 1.

## 제 1 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대경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 라 한다) 교직원의 연봉제 급여에 관한 적용, 기준,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)** 본 규정의 적용대상자는 본 대학교 전체 교직원으로 한다.

**제3조(용어의 정의)** ① 연봉제란 급여를 연단위로 결정하는 급여 제도를 의미한다.

② 연봉이라 함은 연간 기본급, 상여금, 제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.

③ 기본급이라 함은 연봉 결정의 기준금액을 말하며 그 구성은 교원은 본봉, 연구보조비, 정액급식비, 자가운전보조비, 출산보육수당으로 하고, 직원은 본봉, 정액급식비, 자가운전보조비, 출산보육수당으로 한다.

④ 연봉 외 급여라 함은 제2항에 정한 연봉 이외에 제6장에 정한 제 수당 및 성과급을 말한다.

⑤ 성과급이라 함은 조직이나 개인의 업적평가 결과에 따라 개인에게 차등 지급하는 변동성 급여를 말한다.

⑥ 일할계산이라 함은 연봉을 월별로 나누어 지급할 때 해당 월 지급액의 30분의 1을 1일분으로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.

⑦ 초임 연봉이라 함은 직급별 임용 교직원에 대해 정해진 연봉액을 말한다.

## 제 2 장 연 봉

**제4조(연봉)** ① 연봉의 구성은 기본급 및 기타 제 수당으로 한다.

② 연봉은 매년 결정하며 종합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하여 누적 계산한다.

③ 연봉의 계약기간은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 1년간으로 하며, 연봉의 결정은 3월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④ 연봉계약기간 중 임용사항이 변동되어 연봉을 재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연봉계약을 변경 체결한다.

⑤ 교직원 각자의 연봉 계약서는 개인별로 체결한다.

⑥ 강의전담교수 및 외국인전임교원의 연봉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**제5조(기본급 결정)** ① 당해 연도 기본급은 전년도 기본급에 종합평가등급에 따른 다섯 개의 등급(A,

B, C, D, E급)별 차등 인상률을 기본급에 곱한 인상액을 더하여 산정한다. 개정 2013.7.1>

② 기준 기본급 인상률과 등급별 가산인상률은 대학의 경영방침에 따라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③ 기본급 인상률에 따라 기본급 계산 결정에서 천원 미만은 반올림 한다.

④ 강의전담교수 및 외국인전임교원의 연봉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**제6조(초임연봉)** 교직원의 초임연봉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정한다.

**제7조(직원 승진시의 연봉 가산액)** 직원이 연봉계약기간 중에 승진할 경우에는 연봉 가산액을 추가로 지급하며,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**제8조(정규 교직원 외 급여)** 비전임교원, 비정규직 직원, 행정 및 기타 조교의 급여는 매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### 제 3 장 연봉의 지급

**제9조(연봉 지급일)** ① 연봉은 매월 정해진 기준에 따라 분할 지급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월 20일에 지급한다. 다만, 지급일이 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을 지급일로 한다.

② 월 급여지급의 계산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.

**제10조(연봉의 지급방법)** 기본급과 제 수당은 매월 지급한다.

**제11조(연봉 계산)** ① 신규채용, 전임, 전보, 승진, 감봉 등 모든 임용의 경우 연봉 계산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일할 계산한다.

② 재직 교직원이 면직되는 경우 근무일수에 따라 당해 월에 해당하는 기본급, 상여금, 기타 제 수당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. 다만 급여지급일 이후 징계에 의해 해면 되는 자를 제외한 의원 면직자는 당해 월의 기본급, 상여금, 기타 제 수당 전액을 지급한다.

**제12조(병가중의 급여)** 복무규정 제40조에 의한 병가중의 연봉지급은 복무규정 제40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범위 내로 한다. <개정 2013.7.1.>

**제13조(연구년 및 교원국외파견기간중의 급여)** ① 연구년 교수의 급여는 교원안식년제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.

② 교비국외파견 허가를 얻은 교원의 파견기간 중 급여는 교원 교비국외파견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.

### 제 4 장 수 당

**제14조(보직수당)** ① 교원이 본직외의 직에 보임된 때와 직원이 일정한 직위에 임용되어 직무를 부여 받을 때는 보직수당을 지급한다.

② 보직수당은 월정액으로 지급하되 매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**제15조(근무 및 기타 수당)** ① 총장이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특수한 직종, 또는 직무

에 대하여는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, 매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. 다만, 행정 및 기타 조교는 제외한다.

②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매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## 제 5 장 상여금

**제16조(지급제외)**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1. 외국인전임교원 및 강의전담교수, 비전임교원
2. 신규 교직원의 경우에는 상여금 지급 월의 전월 말 현재 근속기간이 2월 미만인 자
3. 휴직 교직원의 경우에는 복직하여 상여금 지급 월의 전월 말 현재 복직 후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
4.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

**제17조(지급기준)** 상여금의 지급 기준은 기본급으로 한다.

**제18조(지급률)** 상여금의 지급률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## 제 6 장 연봉 외 급여

**제19조(연봉 외 급여)** 강사료, 중고등학교자녀교육비 등 연봉 외 급여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.

**제20조(변동 성과급)** ① 기본급, 상여금 및 제 수당 외에 개인 및 조직의 성과 평가에 따라 변동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변동 성과급은 전년도 성과를 평가하여 차등 지급할 수 있으며 성과급 지급액은 대학의 예산과 경영방침에 따라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## 제 7 장 보 칙

**제21조(보충규정)**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본 대학교가 정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한다.

### 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